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9.13] (일부개정) 2022.09.13 조례 제1603호 다른 조례의 개정

> 관리책임부서명 : 뉴딜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41-746-601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9.10.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사회적경제"라 함은 삶의 질 증진, 빈곤·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, 교환, 분배,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.
- 2. "사회적경제 조직"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를 생산, 교환,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 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(이하 "사회적기업 등"이라 한다)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 다
- 가. "사회적기업"이라 함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- 나. "예비 사회적기업"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,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,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.
- 다. "마을기업"이라 함은「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.(개정 2017.12.29.)
- 라. "협동조합 등"이라 함은 논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협동조합 및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- 마. '자활기업'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18조에 근거한 자활기업 (신설 2020.9.10.)
- 바. "농어촌공동체회사"라 함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(개정 2020.9.10.)
- 사. "중간지원조직"이라 함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,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,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.(개정 2020.9.10.)
- 아.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(개정 2020.9.10.)
- 3. "사회적경제기업"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논산공동체기업을 말한다.(신설 2020.9.10.)
- 4. "취약계층"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(개정 2020.9.10.)
- 5. "사회서비스"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(개정 2020.9.10.)
- 6. "연계기업"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(개정 2020.9.10.)
- 7. "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"라 함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.(개정 2020.9.10.)
- 8. "사회적경제 생태계"라 함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,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,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(善)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.(개정 2020.9.10.)

제3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(제목개정 2020.9.10.)

① 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 이라 한다)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
-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(개정 2020.9.10.)
- 3.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(개정 2020.9.10.)
- 5. 행정기관, 유관기관, 시민사회,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
- 8. 재정 확보, 인력 양성, 홍보에 관한 사항(개정 2020.9.10.)
- 9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
제3조의2(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・육성지원)(조신설 2020.9.10.)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・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.
- 1.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, 홍보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
- 2.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
- 3.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, 전시, 문화제 등 행사
- 4.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
- 5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제3조의3(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)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.(조신설 2020.9.10.)

제3조의4(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 등)(조신설 2020.9.10.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논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논산공동체기업으로 등록하고,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·육성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요건, 등록절차,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

제4조(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
- 1. 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등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논산공동체기업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(개정 2020.9.10.)
- 2. 경제문화국장, 지역경제과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실·과장(개정 2020.12.28.)<개정 2022.9.13.>
- 3.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

- 4.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제3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(개정 2020.9.10.)
- 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,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6.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(신설 2020.9.10.)
- 7.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(신설 2020.9.10.)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 해촉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 가 있는 경우
- 2.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3.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
- 4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
- 3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4.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- 5.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.
-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1.6.10.)

제3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

제8조(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(이하 "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-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(개정 2020.9.10.)
- 2.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지원(개정 2020.9.10.)
- 3.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, 심사 및 감독 지원
- 4.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
- 5.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
- 6.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
- 7. 경영, 노무, 회계, 마케팅, 판로개척,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및 창업지원 활동(개정 2020.9.10.)
- 8.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의 교육, 홍보 지원 (신설 2020.9.10.)
- 9. 협동조합 설립 상담, 정보 제공, 신고 지원, 및 설립・운영 교육 지원(신설 2020.9.10.)
- 10.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가치 실현 교육 및 활동지원(신설 2020.9.10.)
- 11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필요한 사항(개정 2020.9.10.)
-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 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(신설 2020.9.10.)
-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20.9.10.)
-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(신설 2020.9.10.)

제8조의2(위탁의 해제 등)(조신설 2020.9.10.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- 2.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
-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(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(조신설 2020.9.10.) ①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- ② 지원센터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.
- ③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,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원센터의 재산은 독립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.
- ⑤ 지원센터는 수입·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점검)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·점검하며,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제10조(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지원)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 위탁 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
제4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

제11조(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)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자활기업,논산공동체기업,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·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
제12조(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)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·대학·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- 1. 사회적경제 조직·민간기업·대학·단체 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
- 2.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
- 3.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

제13조(시설물의 설치 등)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- 1. 사회적경제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
- 2.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
- 3.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(조신설 2020.9.10.)

제14조(시설비 등의 지원)(개정 2020.9.10.)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·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「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-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, 사용료 및 사용・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이 경우 시장 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(예비)사회적기업・(사회적)협동조합・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・마을기업・논산공동체기업 ・자활기업・중간지원조직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.(신설 2020.9.10.)
- ③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제15조(경영지원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・법률・기술・세무・노무・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
- 2.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
- 3.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.

제1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20.9.10.)

- ② 삭제(2020.9.10.)
-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.
- ⑤ 제4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명칭,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2.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
- 3.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

- 4.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
- 5. 재정지원기관에 요청한 사항
- 6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- 7. 임·직원 구성(유·무급 포함) 및 임면에 관한 사항
- 8.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

제17조(우선구매 등 지원)(개정 2020.9.10.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 척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시 본청 및 읍·면·동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, 목표,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각종 업무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시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및 이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.

제18조(교육훈련 지원)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제19조(조세감면)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제20조(홍보지원 등)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9.10.)

- 1.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
- 2.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
- 3. 전문가 포럼,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

제21조(연대지원)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,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, 협동화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'사회적경제 네트워크'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(조신설 2020.9.10.)

제22조(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)(개정 2020.9.10.)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「논산시 지방보조금의 관리 조례」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 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3조(지도·감독)(개정 2020.9.10.)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5장 사회적경제 육성기금(장 신설 2020.9.10.)

제24조(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조성·운용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하여 운용한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시의 출연금
- 2. 기금운용 수익금
- 3. 개인・법인・단체의 출연금 또는 물품
- 4.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자금
- 5. 보조금, 차입금, 예수금, 융자상환금
- 6. 그 밖에 수입금

제25조(기금의 용도)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한 내용으로 시의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.

- 1.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
- 2.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투·융자 및 투·융자 손실액
- 3.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4.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
- 5.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제26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•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7조(기금운용계획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- 2.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
- 3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
- 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- 1. 기금운용관 : 기금업무 부서장
- 2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주사
-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기금 예치(예탁)금 관리대장(별지 제1호서식)
- 2. 기금 총괄부(별지 제2호서식)
- 3. 기금 수입부(별지 제3호서식)
- 4. 기금 지출내역부(별지 제4호서식)
- 5. 기금 현금출납부(별지 제5호서식)

제29조(기금결산)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- 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-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-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・지출의 절차 및 출납・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・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따른다.

제31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장 보칙

제32조(포상)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, 단체,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「논산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(개정 2020.9.10.)

제3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(개정 2020.9.10.)

부칙(조례 제971호, 2015.9.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1154호,2017.12.29. 다른조례의 개정(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다목 중"행정자치부"를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(이하생략)

부 칙(조례 제1425호, 2020.9.1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1451호, 2020.12.28. 다른 조례의 개정<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>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⑩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"사회적경제과장"을 "뉴딜경제과장"으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1477호, 2021.6.10. 다른 조례의 개정<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생략)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중"「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를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"로 한다.

(이하생략)

부칙(조례 제1603호, 2022.9.13. 다른 조례의 개정<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>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"행복도시국장, 뉴딜경제과장"을 "경제문화국장, 지역경제과장"으로 한다.

이하생략